

의안 번호	587
----------	-----

(가칭)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(가칭)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4. 16.

전문위원 한 미 경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587호

다. 제출일자 : 2026. 04. 03.

라. 회부일자 : 2026. 04. 07.

2. 제안이유

- (가칭) 「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」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,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및 제4조의2(승인 및 동의)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시설 : (가칭)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및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노인복지분야 전문성 및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질 높은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
- ※ 25개 자치구 40개 노인종합복지관 모두 위탁 운영 중
- 다년간 경험을 축적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
- 이용자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 대상자 맞춤 서비스 가능
-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,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기대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(가칭)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관리 운영
- 지역사회활동(어르신 사회활동, 지역기관 참여, 지역복지사업) 발굴 및 연계
- 외부사업 공모·참여 및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제공
-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

라. 위탁개요

- 위 치: 동선동4가 342 외 2필지 * 동선2주택재개발구역 내
- 규 모: 지하2층/지상6층, 연면적 2,837.63㎡(대지면적 710.47㎡)
- 개관일: 2027. 03월(예정) *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
- 현황사진 및 위치도



○ 시설현황

층 별	주 요 용 도	면 적 (공용면적 포함)
	합 계	2,837.63㎡
지상6층	• 경로식당, 조리실, 영양사실, 카페라운지	366.84㎡
지상5층	• 체력단련실, 물리치료실, 건강상담실	366.80㎡
지상4층	• 프로그램실(2개), 서예실, 장기바둑실, 사회교육사무실	378.80㎡
지상3층	• 다목적강당, 휴게라운지	378.80㎡
지상2층	• 통합사무실, 관장실, 일자리상담실, 회의실, 문서고	403.19㎡
지상1층	• 주차장(12대), 부출입구	395.34㎡
지하1층	• (주출입구) 안내데스크, 상담실, 정보화교육장	365.12㎡
지하2층	• 기계실, 전기실	182.74㎡

○ 위탁예산: 1,768,781천원(시비 55% , 구비 45%)

- 인건비: 1,460,089천원(25명 12개월분)

- 운영비 및 사업비: 308,692천원

※ 2027년도 예산 편성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마. 위탁기간: 2027. 01. 01. ~ 2031. 12. 31.(5년)

* 공사일정에 따라 협약체결일 조정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
(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하여 최다득점자 선정)

사. 향후 추진계획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○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| 2026. 06. ~07. |
| ○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·심사 및 수탁기관 결정 | 2026. 09. |
| ○ 위·수탁 협약 체결 | 2026. 10. |
| ○ 민간위탁[개관준비] | 2027. 01. |

4. 검토의견

□ 동의안 개요

-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예정인 (가칭)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성북구 민간위탁 조례” 라 한다) 제4조의2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(가칭)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2027년 3월 개관 예정인 시설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례” 라 한다) 제5조1)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, 위탁체결일로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〈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〉

시설명	소재지	규모(㎡)		종사자 수	위탁기간	'27년 사업비 (천원)
		대지	건물			
가칭)구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	동선동4가 342 외 2필지 (동선2주택재개발구역 내)	710.47	2,837.63 (지하2층/지상6층)	25명	'27. 01. 01. ~ '31. 12. 31. (5년)	1,768,781 (사비 55%, 구비 45%)

1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, 시설의 위탁기간은 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.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.

□ 민간위탁의 적정성

-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2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3) 및 「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, 5년간 위탁할 수 있음.
- 또한, 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,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□ 종합의견

-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노인종합복지관 관리·운영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「성북구 민간위탁 조례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2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3)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1.~7.(생략)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